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4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획처 내에 대학혁신지원사업팀(이하 "사업팀")을 둔다.	제4조(대학혁신사업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부총장 산하 혁신사업단을 두고 하부조직에 대학혁신사업팀(이하 "사업팀")을 둔다.	202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 실무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부서 간 원활한 사업관리 추진을 위해 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)를 둔다.	제5조(대학혁신사업팀 실무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부서 간 원활한 사업관리 추진을 위해 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)를 둔다.	202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제5조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사업총괄책임자가 된다.	제5조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	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 변경
제6조(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)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과 행정처 재무회계팀이 수행한다.	제6조(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)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과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센터 재무회계팀이 수행한다.	2020년 1월 16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